

15. 農地法 施行規則

農林水産部令 第1,217號 1995. 12.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부지가 농지가 되는 기타 개량 시설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상시종사의 범위)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종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2장 농지의 소유

제4조(시험·연구·실습지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범위) 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라 함은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등을 말한다.

제5조(시험·연구·실습지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등이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의 추천(농림수산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거쳐 농림수산부 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부 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에 의한다.

제6조(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의 소유인정 신청) ①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소유인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8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소유인정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소유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등) ①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다.

③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2. 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3. 농지원부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다)
5. 별지 제4호 서식의 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소유인정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영 제10조 제1항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

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⑤시·구·읍·면장은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에 의한다.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통지) ①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농지매수청구서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매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명령서사본
2.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등) ①영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위임증서

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2. 당해 농지의 토지대장등본
3.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당해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제11조(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영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 가. 감정평가료
 - 나. 공매공고료
 - 다. 명도소송비용 기타 처분에 필요한 비용
2. 수수료
 - 가. 농지의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그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 나.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이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가목의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2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이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지대구분 및 용도구분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규모확대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지의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농지의 농업외 용도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농지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계획,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

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농지이용실태조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 제4항 제5호에서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및 그 지불방법
2. 농업경영을 수위탁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그 지불방법
3. 소유권을 이전하는 농지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사항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①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2.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내용
3.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과 이에 관련된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도표등을 읍·면 또는 동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9조에서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된 문서(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인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문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사업시행자에 한한다)

제17조(대리경작자지정예고등) ①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예고를 할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그 예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③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토지사용료의 지급) ①대리경작자는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를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토지사용료 100원에 대하여 1년 25원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 당시 당해농작물의 농가판매가격(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매입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2등급의 매입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와 대리경작자가 토지사용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19조(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등) 법 제19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 또는 해지신청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0조 제2항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4.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5.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제21조(표준계약서) 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양식을 정

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22조(임차료의 상한조정등) ①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하여 매년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시·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검토결과 그 임차료의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4장 농지의 보전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제23조(농업·축산업 영위등에 필요한 농업용·축산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34조 제5항 제4호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탈곡장·잠실·애누에공동사육장 및 잎담배건조실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24조(기타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34조 제7항 제1호에서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산종묘 배양시설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2절 농지의 전용

제25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영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

다.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제26조(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 영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제27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등) ①영 제38조 제1항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8호 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전용대상농지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9호 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농지개량조합장의 의견서(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지개량조합의 수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농지전용허가) ①농림수산부장관이나 영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공공용 목적사업의 시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①영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다만, 당해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3.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4.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관할청은 영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8호 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 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

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영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제30조(농지전용 신고) ①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5호 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①영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한다)
3. 타용도사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4.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영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

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심사의견서 등) 영 제42조 제2항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8호 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심사의견서
2. 농지개량조합장의 의견서(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지개량조합의 수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관할청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①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사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3.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 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관할청은 영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28호 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32호 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

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 ①영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36조(농지전용허가등의 통지서류) ①영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 물부지의 조서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

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제37조(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 영 제52

조 제2항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
2. 법 제37조 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
3.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 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또는 동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
 - 나. 건축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한 날, 건축허가를 받은 날, 건축신고를 수리한 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 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날

4.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또는 동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 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날

제38조(농지조성비의 수납업무대행 및 부과결정 통보)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수납등에 관한 업무를 농어촌진

흥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②관할청은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5호 서식의 부과결정서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 ①농어촌진흥공사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6호 서식의 농지조성비 납입통지서를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농어촌진흥공사는 제1항 및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농지조성비의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축·수협중앙회”라 한다)와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축·수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회원조합으로 한다.

④수납기간은 농지조성비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5)의 농지조성

비납입영수증을 납입의무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6호 서식(4)의 농지조성비 수납통지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별지 제36호 서식(3)의 농지조성비수납통지서는 관할청에 각각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납입기간의 연장) ①영 제5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7호 서식의 농지조성비납입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조성비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조성비를 납입기간내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농지조성비납입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농지조성비납입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연장하고자 하는 납입기간과 연장사

유

2. 농지조성비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3.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관할청은 영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연장을 요청한 기관과 농어촌진흥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독촉장등) ①영 제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다.

②관할청 및 농어촌진흥공사는 별지 제40호 서식의 농지조성비 수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농지조성비의 자진납부) ①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영 제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자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농지조성비내역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하는 부과결정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농지조성비자진납부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수납기관에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자진납부의 납부기간은 농지

조성비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4)의 농지조성비자진납부영수증을 납입의무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42호 서식(3)의 농지조성비자진납부수납통지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별지 제42호 서식(2)의 농지조성비자진납부수납통지서는 관할청에 각각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⑤관할청과 농어촌진흥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농지조성비자진납부수납통지서등을 확인하여 농지조성비의 자진납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 ①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3호 서식의 농지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입하여야 하는 농지조성비의 100분의 30을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되, 최종납부일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4조(농지조성비의 환급등) ①관할청은 영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를 농지조성비납입자와 농어촌진흥공사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 서식의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2.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③농어촌진흥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46호 서식의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
필통지서를 관할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농지조성비의 수납보고) ①영 제
58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부장관에
대한 농지조성비수납상황의 보고는 별
지 제47호 서식(1)에 의한다.

②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 대한 농지조성비수납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47호 서식(2)에 의한다.

제46조(농지전용허가등의 취소·철회등)

①법 제4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
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당해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
지전용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48호 서식의 농지전용신고철회서
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법 제4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
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
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 서식
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
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당해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관계공사의 중지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농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년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5. 허가취소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제47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①법 제42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목
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
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49호 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
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
획서
2. 용도변경예정구역이표시된 지적도등
본 또는 임야도등본
3.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
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
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 제3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 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1호 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영 제37조 제4항 및 영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영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

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③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영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5호 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등

제49조(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47조 제2항 제2호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제50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영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2호 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

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농지원부등의 관리) ①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농지원부(법 제51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는 법에 의한 비치 또는 이용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농지원부의 작성·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원부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⑤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2조(농지원부화일의 정리·보관등) ①

농지원부화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농지원부화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원부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원부화일은 멸실·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농지원부화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농지원부화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지원부의 열람은 당해 시·구·읍·면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에 하여야 한다.

제54조(자경증명의 발급) ①법 제5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 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 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4호 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55조(농지전용허가등의 보고)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
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55
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
구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3조의 규
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
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56호 서식의 포상금지급신
청서를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

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
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
에 당해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
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다.

③농림수산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
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
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
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포
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
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
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7조(증표)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57호 서식에 의한
다.

제58조(청문)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
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하고자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
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료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9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영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수산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지개혁법시행규칙
2.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3 내지 제34조의 6·제37조 및 제37조의 2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의 2 제4항중 “제37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를 “농업 또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농업 또는 임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산림 등이 소재하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이 조에서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결한 시·구·읍·면의 관할구역에서 거주하는 가구와 이에 준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로 한다.

제35조의 2 제1항중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5조의 3 제1항중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를”을 “농지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결정서에 농지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 및 관려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3”을 “농지법시행규칙 제39조”로

한다.
제35조의 6 제2항 전단중 “반환할 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를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에 기재하여 납부자와 농어촌진흥공사에”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환급하여야 한다”를 “환급하고,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등지급필통지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6호의 7 서식 내지 제6호의 10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범위(제4조 관련)

구 분	범 위
공공단체	1.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3.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과 그 연합회 4.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에 의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농업생산자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 3.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

구 분	법 위
농업연구기관 중요생산자	4.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영업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생산기술·자재 등의 개발· 개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중요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중요업자 및 그 단체
농업기자재의 생 산자	1.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비료생산업자 및 그 단체 2. 농약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약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그 단체 3.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생산 하는 자 및 그 단체

〈별지서식 생략〉

◇제정이유◇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및 농지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 14835호)이 제정됨에 따라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는 기타 농지개량시설의 범위, 시험·연구·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와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지의 범위에 토양의 침식이나 채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부지가 포함되도록 함(제2조).

나.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기자재생산자 등의 범위를 정하고, 이들 공공단체 등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절차를 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유상한초과농지등 처분대상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발생사유·처분기한·이의제기방법 등을 기재한 처분의무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하되, 처분의무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주민의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마.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지정예고, 토지사용료의 지급 및 대리경작자지정중지신청 등 대리경작자지정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흡수하여 정함(제17조 내지 제19조).

바.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의 절차, 농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흡수하여 정하고,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농어촌산업지구안에서의 농지전용신고절차를 정함(제25조 내지 제36조, 제38조 내지 제48조).

사. 농지조성비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날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한 날등으로 정함(제37조).

아. 농지원부의 열람·등본교부와 자경증명의 발급신청·발급절차에 관하여 정함(제50조 내지 제53조).

자.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농지법 부칙에서 폐지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3개 농림수산부령을 폐지함(부칙 제2조).

〈농림수산부 제공〉